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4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의 용어 통일 및 자구를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의 국가안보의식 역량을 제고하고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체계·자구 정비 및 법령의 현행화 등(안 제9조, 제11조 등)

나. 구청구청장의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원대책”을 각각 “지원 대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부의장은”을 “부의장은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직책”을 “그”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을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민방위기본법」 제7조”를 “ 「민방위기본법」 제7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통합방위 지원 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구성 운영하며”를 “구성·운영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방위종합상황 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 상황실을 설치”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설치·”로,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은 동작구청”을 “군·경합동상황실은 구청”으로,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은”을 “군·경합동상황실은”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을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으로 한다.

-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제목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으로 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으로,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군·경합동상황실”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으로 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u>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u>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u>(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u>지원 대책</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u>지원대책</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u>지원대책</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서울 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u>----- ----- -----.</p> <p>제2조(기능) <u>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지원 대책</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u>지원 대책</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 <u>지원 대책</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마. (현행과 같음)</p>

3. 지역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용 및 지원대책

가.·나. (생략)

4. (생략)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동작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③ 협의회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

2. (생략)

3.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4. ~ 6. (생략)

7. 구지역을 관할하는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8. ~ 15. (생략)

④ 의장 및 당연직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

3. -----
----- 지원 대책

가.·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
-----.

③ -----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동작구-----

4. ~ 6. (현행과 같음)

7. -----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원

8. ~ 15. (현행과 같음)

④ -----
----- 그 -----

간으로 하고, 위촉직 부의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는 지하종합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동

-----.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2. 「민방위기본법」 제7조-----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하며 --
-----.

② -----

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한다.

③ (생략)

④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구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은 동작구청 내에 두고, 동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은 지역실정에 맞게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신설>

[별표 1]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제10조 관련)

동 주민센터 -----.

③ (현행과 같음)

④ ----- 통합방위 지원본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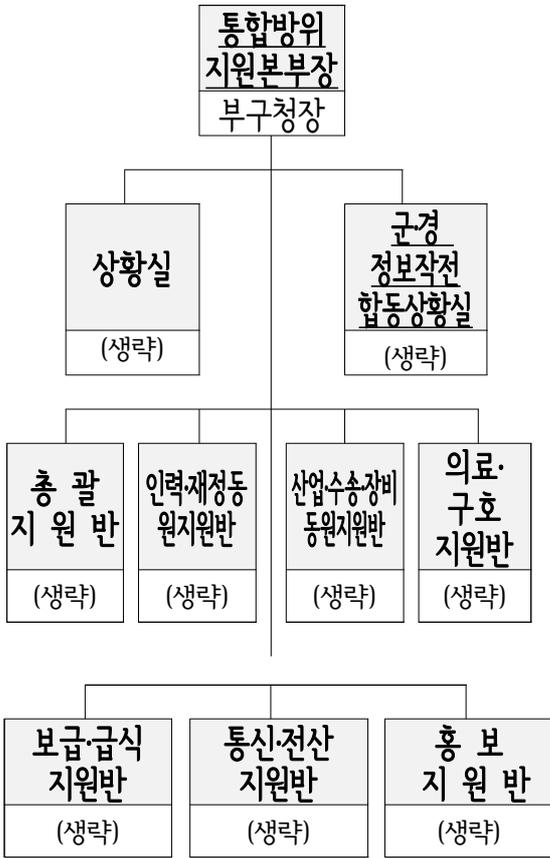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설치·
--- 군·경합동상황실은 구청 -
----- 군·경합동상황실은 -----
----- 통합방위 지원본부장 -----.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제10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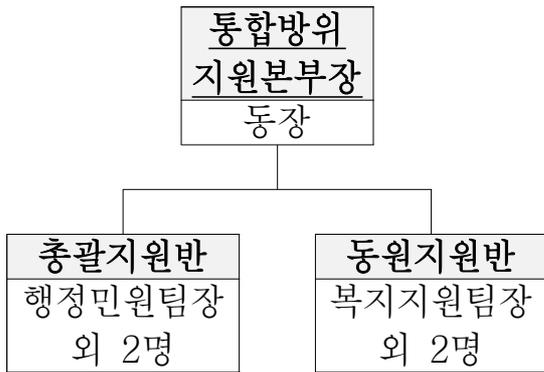


※ (생략)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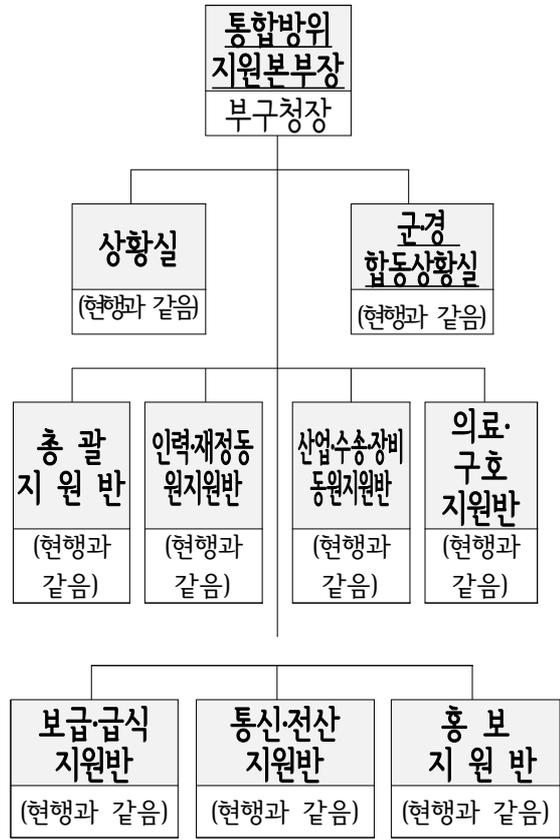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제10조 관련)



1) (생략)

2)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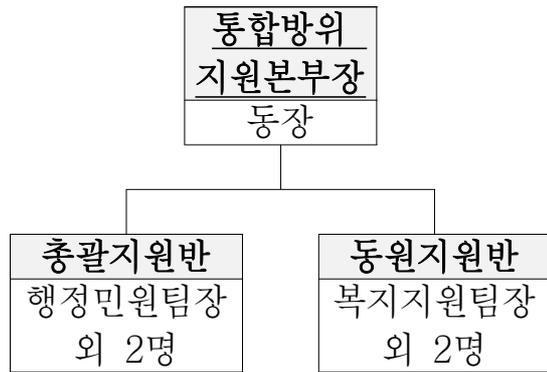


※ (현행과 같음)

[별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제10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